

의안번호	2214224
의 퇴 인	유상범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20.
추계번호	25F614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조합 법인세 과세특례, 조합 출자금 비과세,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
적용기한 4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조합 법인세 과세특례,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, 조합 예탁금 이자 소득 저율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9년 말로 4년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 9,319억원(연평균 7,86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(안 제72조)		-2,861	-2,929	-2,998	-3,068	-11,856	-2,964
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 (안 제88조의5)	-219	-394	-394	-394	-175	-1,576	-315
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 (안 제89조의3)	-3,595	-6,472	-6,472	-6,472	-2,876	-25,887	-5,177
합계	-3,814	-9,727	-9,795	-9,864	-6,119	-39,319	-7,864

주: 각 항목별 세수효과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,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2조 (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4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2	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-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-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(2026년부터 저율과세*) * 2026년 5%, 2027년 이후 9% -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(2030년부터 저율과세*) * 2030년 5%, 2031년 이후 9%	-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89조의3 (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	○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연장 -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(2026년부터 저율과세*) * 2026년 5%, 2027년 이후 9% -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(2030년부터 저율과세*) * 2030년 5%, 2031년 이후 9%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72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	-
2	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○	-
3	안 제89조의3 (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가. 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

- 개정안은 2025년중 통과되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계
 - 징수기준에 따르면 2026년 법인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
- 향후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분포는 2024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며,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의 감면 실적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

-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산출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
 -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을 추계에 활용하되, 2024년 이전 감면실적은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의 세율 인하를 반영해 조정한 후 활용
- 조정된 과세특례의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5년('20~'24년)간의 실적 증가 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나. 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-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 -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(2025년)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 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(2026~2030년)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

다.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-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 -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(2025년)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 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(2026~2030년)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□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

-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,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, 9~12%의 저율과세 적용

[표 2] 일반법인과 조합법인 과세체계 비교

		일반법인	조합법인
적용대상		일반법인	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중소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연연초생산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
과세표준		당기순이익 + 익금산입 - 익금불산입 - 손금산입 + 손금불산입 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비과세소득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	당기순이익 + 손금불산입(기부금 등 8개 항목 ¹⁾) = 과세표준
과표 구간별 세율	2억원 이하	9% ²⁾	9%
	2~20억원	19% ²⁾	
	20~200억원		12%
	200~3,000억원	21% ²⁾	
	3,000억원 초과	24% ²⁾	

주: 1) 기부금, 접대비, 대손금, 대손충당금, 과다경비, 업무무관비용,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
 2) 2022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각각 1%p씩 높은 세율 적용

□ (특례실적)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은 2020년 3,271억원 수준에서 2023년 5,113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4년 3,173억원 수준으로 감소

- 2024년 실적 감소는 법인 실적의 부진 외에도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

법인의 세율 인하가 2023년 귀속소득부터 반영된 결과

[표 3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: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
과세특례 실적	3,271	3,347	4,230	5,113	3,173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

-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~2023년간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을 조정
한 후, 2020~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정
- 2024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특례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4]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, 세율 및 산출세액: 2024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개)	과세표준 (억원)	과세특례 적용		과세특례 미적용		세수효과 (A-B)
			세율 (%)	산출세액 (A, 억원)	세율 ¹⁾ (%)	산출세액 (B, 억원)	
합 계	3,172	41,728	-	4,236	-	7,409	-3,173
2억원 이하	855	615	9	56	10	55	1
2~20억원	1,801	15,092		1,361	20	2,507	-1,147
20~200억원	511	24,745	12	2,669		4,599	-1,931
200~3,000억원	5	1,276		150	22	247	-97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4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세율인하에 따른 특례
실적을 조정
- 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 전후의
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5]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: 2024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과세표준 (B,억원)	1인당 과세표준 (C=B/A, 억원)	특례 미적용시					
				'22년 세법개정 이전 기준			'22년 세법개정 이후 기준		
				세율 (D,%)	산출세액		세율 (D',%)	산출세액	
					1인당 (E=C ×D, 억원)	전체 (F=E ×B, 억원)		1인당 (E'=C ×D', 억원)	전체 (F'=E' ×B, 억원)
합 계	3,172	41,728	—	—	—	7,826	—	—	7,409
2억원 이하	855	615	0.7	10	0.07	62	9	0.06	55
2~20억원	1,801	15,092	8.4	20	1.5	2,658	19	1.4	2,507
20~200억원	511	24,745	48.4		9.5	4,847		9.0	4,599
200~3,000억원	5	1,276	255.2	22	51.9	260	21	49.4	247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, 2024년 기준 11.6%의 실적이 하향 조정

[표 6] 조합법인 과세특례 실적 조정: 2024년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, %)

	특례적용시 산출세액(A)	특례 미적용시				실적조정율 ([C-E]/C)
		'22년 세법개정 이전 기준		'22년 세법개정 이후 기준		
		산출세액(B)	특례실적 (C=A-B)	산출세액(D)	특례실적 (E=A-D)	
산출세액	4,236	7,826	3,590	7,409	3,173	-11.6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4년 기준으로 2020~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면, 최근 5년간 특례실적은 연평균 2.4% 증가함

[표 7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 조정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 (‘20~’24년)
특례 실적	조정 전(A)	3,271	3,347	4,230	5,113	3,173	—
	조정 후 (A×[1-11.6%])	2,891	2,958	3,738	4,519	3,173 ¹⁾	2.4

주: 1)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

-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(2.4%)을 반영하여 추계

[표 8]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
세수효과	-2,861	-2,929	-2,998	-3,068

(3) 추계결과

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2,861억원, 2030년 3,068억원 등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총 1조 1,856억원 (연평균 2,96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0년,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(안 제72조)	-2,861	-2,929	-2,998	-3,068	-11,856	-2,964

나. 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

1) 조세지출 실적

-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5년 613억원 등 최근 5년간 증감추세 반복

[표 10]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: 2021~2025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1	2022	2023	2024	2025 ¹⁾
조세감면액	491	611	868	594	613
(증감률)	(△0.2)	(24.4)	(42.1)	(△31.6)	(3.2)

주: 1) 상반기 실적 기반 전망치
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) 추계 방법

-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(2025년)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 -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(2025년) 수준(613억원)을 기준으로 함
 - 2025년 전망치에 2025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 -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배당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 -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%p, 2027~2029년 9%p, 2030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 - 개정안에 따르면 2026~2029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30년은 5%, 2031년 이후는 9% 적용

[표 11]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연도별 배당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현행(A)	5	9	9	9	9	9
개정안(B)	0	0	0	0	5	9
소득세율 변동폭(B-A)	△5	△9	△9	△9	△4	0

- 2025년 배당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조세지출액이 613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44억원(=613억원/14%p)으로 볼 수 있음
 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-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3)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9년말로 4년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30년 5년간 총 1,576억원(연평균 315억원)으로 예상

[표 12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 (안 제88조의5)	-219	-394	-394	-394	-175	-1,576	-315

다.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

1) 조세지출 실적

- 조합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5년 1조67억원 등 최근 5년간 증가 추세(2022~2025년 연평균 47.9% ↑)

[표 13]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: 2021~2025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 ¹⁾
조세감면액	3,269	3,113	6,226	9,765	10,067
(증감률)	(△25.2)	(△4.8)	(100.0)	(56.8)	(3.1)

주: 1) 상반기 실적 기반 전망치
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) 추계 방법

-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(2025년)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-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(2025년) 수준(1조67억원)을 기준으로 함
 - 2025년 전망치에 2025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 -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이자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 -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%p, 2027~2029년 9%p, 2030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 - 개정안에 따르면 2026~2029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30년은 5%, 2031년

이후는 9% 적용

[표 14]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연도별 이자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현행(A)	5	9	9	9	9	9
개정안(B)	0	0	0	0	5	9
소득세율 변동폭(B-A)	△5	△9	△9	△9	△4	0

- 2025년 이자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조세지출액이 1조67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719억원(=1조67억원/14%p)으로 볼 수 있음
 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-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3)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9년말로 4년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30년 5년간 총 2조 5,887억원(연평균 5,177억원)으로 예상

[표 1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 (안 제89조의3)	-3,595	-6,472	-6,472	-6,472	-2,876	-25,887	-5,177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